

14.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 내역

□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가입 의무

- 가입대상: 특수건물* 소유자

*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공장, 공동주택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

- 손해배상책임: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사망 및 부상에 대한 손해 보상(무과실 포함)

- 가입기간: 건물 준공검사 합격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내 가입

- 제외 대상

-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의 대사·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이 소유하는 건물

- 대한민국에 파견된 국제연합의 기관 및 그 직원(외국인에 한한다.)이 소유하는 건물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소유하는 건물

- 군사용건물과 외국인소유건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관련법률: 붙임

최근 3년간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실적

(단위 :천원)

구분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화재보험	신체손해배상 책임담보	화재보험	신체손해배상 책임담보
FY02	100,308,695	3,528,222	57,143,800	292,669
FY03	85,255,171	2,778,754	134,932,607	319,496
FY04	95,335,979	2,580,662	76,183,709	303,429

* 출처 :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각 연호.

<붙임>

관련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에 가입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 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8.12.31, 1997.1.13, 2003.5.29>

1. "손해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4조제1항에 규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3. "특수건물"이라 함은 국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홍행장·숙박업소·공장·공동주택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지역) 이 법의 적용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건물소유자 손해배상 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건물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수건물의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보험가입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 "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수재 또는 도괴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손해보험회사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

④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항의 특약부화재보험계약을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 (외국인등의 소유건물에 대한 특례) 특수건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전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의 대사·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이 소유하는 건물

2. 대한민국에 파견된 국제연합의 기관 및 그 직원(외국인에 한한다)이 소유하는 건물

3.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소유하는 건물
4. 군사용건물과 외국인소유건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제7조 (보험가입의 촉진)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 의무자가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의무자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8.1.13>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금액)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화재보험은 특수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2.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중 사망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3.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중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전항제1호에 규정한 시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1.13, 1999.1.29>

제23조 (벌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건물) ①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물로 한다. <개정 1997.6.13, 1998.4.1, 1999.5.24, 2001.7.7, 2002.12.5, 2003.6.30, 2003.11.29>

1.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에 공하는 건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3.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6.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7. 방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

치단체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다만, 사단법인 학교재해복구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을 제외한다.

12. 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1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14. 층수가 11층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를 제외한다)·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②제1항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층수계산방법은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되,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인 경우에는 층수로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하층은 이를 층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74.12.31, 1991.9.3, 1997.6.13, 2002.12.5>

제3조 (적용지역)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의 적용지역은 전국으로 한다.<개정 1994.12.23, 1997.6.13>

[전문개정 1991.9.3]

제4조 (특례) 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용 건물은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이 관리하는 건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 이외의 건물을 말한다.

1.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3층이상의 건물

2. 국군통합병원의 진료부와 병동건물

3. 군인공동주택

제5조 (보험금액) ①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3.8.18, 1991.9.3, 1997.6.13, 2000.12.30, 2002.12.5>

1.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 1에서<%생략:별표1%> 정하는 금액. 다만, 지급보험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별표2에서<%생략:별표2%> 정하는 금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1997.6.13, 1999.7.6>

③부상자가 치료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금을 함께 지급한다.

④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함께 지급한다.<신설 1991.9.3>

⑤제1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신설 1991.9.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조 (실손해액) ①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남자평균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7.7.10>

② 영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신체상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해를 치료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개정 1991.10.21, 1997.7.10>

제2조의2 (특수건물 시가 결정 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특수건물의 시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한다.<개정 1983.12.15, 1991.10.21, 1997.7.10>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최근 1년이내에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서에 의한 가액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대차대조표에 의한 가액
3. 삭제<1997.7.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물의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액으로 한다.<개정 1997.7.10>

1. 건물의 신축가액 : 정부가 출자한 감정평가전문기관에서 제정한 최신 건물신축단가표에 의한 금액
2. 기계설비의 재조달가액 : 당해기계설비의 기종·용도·제조회사·형식 및 시방능력등과 같거나 유사한 설비의 거래가격
3. 건물 및 기계설비의 감가액 : 보험업법 제1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손해보험협회가 정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에 의한 감가율에 다음 각목의 가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가. 건물과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액
 - 나. 기계설비의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물의 시가를 결정하는 경우에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합의된 때에는 당해특수건물의 시가로 산출된 가액을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개정 1997.7.10>

④ 삭제<1997.7.10>